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13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1-28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1-29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1
2021-30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17
2021-31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교육과)	23
2021-32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소통과)	27
2021-3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35
2021-34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43
2021-35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49
2021-3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시설사업소)	55
2021-37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	65
2021-38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	69
2021-39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81
2021-4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9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범위에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형식에 맞게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전 조문)

(현행) 예산편성 과정⇒ (변경)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정함(안 제6조)

1) 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2)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마. 법령 위임범위 및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대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구성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8조~제18조)

1) 위원 수 확대: 15명⇒30명

2) 위촉 위원 연임

3) 위촉 위원 공개모집 절차 구체화

4)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5)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안 제18조)

(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기능대행

(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거창읍은 한시적으로 지역회의 구성

(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의결

바. 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을 정함(안 제19조)

사. 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을 정함(안 제21조)

1)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있는 자

2)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따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 제39조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1,400천원 확보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10.~3.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구체적 운영방안 등

제6조(주민의견수렴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
3.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제7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의 사항
2.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보건사업소분과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사업소 소관업무
2. 행정복지분과위원회: 행정복지국 소관업무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4. 농업분과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의 직제순 상위 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읍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거창읍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1. 주민예산학교 수료자
2. 예산 및 재정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거창읍 지역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회의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거창읍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제3조(유효기간)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위원회 수당: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나. 예산학교 운영: 제19조(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

다. 공로자 포상: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근거: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나. 내용: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위원회 수당, 포상금 등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위원회 수당: 2021년도 예산 1,400천원 확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권 해 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점점 다양해지는 보건수요 대처와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정비로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시책 및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 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안 제10조)

나. 정원의 총수 증원 11명: 767명⇒778명(안 제25조)
집행기관의 정원: 증11명(753명⇒764명)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1) 일반직 4급 정원: 증1명(3명⇒4명)

2) 일반직 4~5급 정원: 감1명(2명⇒1명)

3) 일반직 5급 정원: 증1명(37명⇒38명)

4)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9명

가) 현행: 690명(본청323, 의회11, 직속기관118, 사업소37, 읍41, 면160)

나) 변경: 699명(본청326, 의회11, 직속기관121, 사업소37, 읍43, 면161)

5) 연구직(연구사) 정원: 증1명

가) 현행: 5명(본청2, 직속기관2, 사업소1)

나) 변경: 6명(본청3, 직속기관2, 사업소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38조

나. 예산조치: 2021년 1회 추경예산 513,000천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7명”을 “7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53명”을 “764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치)ㅂ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7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53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8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64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78 ~~767~~	350 ~~346~~	14	157 ~~153~~	72 ~~69~~	85 ~~84~~	41	44 ~~42~~	172 ~~17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42 ~~732~~	344 ~~341~~	14	128 ~~124~~	43 ~~40~~	85 ~~84~~	40	44 ~~42~~	172 ~~171~~
	4급	4 ~~3~~	3		1 ~~0~~		1 ~~0~~			
	4~5급	1 ~~2~~			0 ~~1~~		0 ~~1~~		1	
	5급	38 ~~37~~	15	3	6 ~~5~~	4	2 ~~1~~	3		11
	6급 이하	699 ~~690~~	326 ~~323~~	11	121 ~~118~~	39 ~~36~~	82	37	43 ~~41~~	161 ~~16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5~~	3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증원 11명

나. 관련조문: 제2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 비	513	513	513	513	513	2,565

3. 관련 의견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시책 및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1년 인건비: 513,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신설하고 청년단체 등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함(안 제명, 제6조·제9조)

나. 청년네트워크 신설(안 제13조의2)

1) 기능: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

2)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다. 청년시설 위탁 근거 신설, 재정지원 재량범위 확대(안 제19조)

라. 청년단체 등의 재정지원 재량범위 확대(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 「청년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5백만원 확보, 1억6천만원 추경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6조·제8조·제13조의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청년발전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로 한다.

제8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발전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로 각각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거창군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하거나 청년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중 “경비의 일부를 보조”를 “경비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발전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청년발전위원회 및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 략) 4.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6. (생 략)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6.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거창군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하거나 청년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3. (생 략)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청년네트워크 활동 경비 지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 연도 (2021년)	2차 연도 (2022년)	3차 연도 (2023년)	4차 연도 (2024년)	5차 연도 (2025년)	합계
군비	165	55	55	55	55	38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도)

가.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5백만원

나. 청년 역량강화 지원: 160백만원

1) 청년 언택트 마케팅 지원: 100백만원

2) 청년 동아리 지원: 10백만원

3) 경남·울산지구 JC회원대회 지원: 50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임 양 희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1-3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계에 부담을 주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도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3조)

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및 범위를 정함(안 제4조)

1)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2) 휴학기간 최대 6학기 또는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 이내일 것

라. 중복지원 방지 및 지원 중단을 정함(안 제5조·제6조)

1) 지원 제외: 다른 기관에서 전액지원 받을 경우

2) 지원 중단: 지원자격 상실, 고등교육기관 제적 등

마.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5백만원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학자금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미취업 졸업생 포함.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중복지원 방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장학사업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나. 비용발생 요인: 대학생(미취업 졸업생 포함.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5	5	5	5	5	25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학자금 대출 이자: 5백만원

가. 산정내역: 1,015,750천원(대출잔액)×1.70%(연이율)×25%(신청율)

나. 5년 이내 최대 대출잔액 기준 산정

2. 한국장학재단 거창군 대학생 대출 통계자료

(단위: 명, 천원)

구 분	대출 종류(대출잔액 기준)								이자 (1.70%)
	합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일반상환		일반상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6년	222	404,051	191	323,389	16	31,592	15	49,070	
2017년	255	435,974	182	288,661	52	84,340	21	62,973	
2018년	351	670,081	239	424,647	85	142,026	27	103,408	
2019년	536	985,841	359	634,381	143	237,882	34	113,578	
2020년	528	1,015,750	371	661,914	127	240,261	30	113,575	**4,317**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임 양 희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정함(안 제2조)

나.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주소정보안내판 등에 광고 게재 시 비용부담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주소정보 생활화 사업을 정함(안 제5조)

마.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1조)

1) 위원회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바.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정함(안 제12조)

사.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을 정함(안 제13조)

아. 업무의 위탁근거를 정함(안 제14조)

자. 토지 등의 출입증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도로명주소법」제29조·제31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118백만원 확보(예산추가 요인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4.~3. 2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이름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사업)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군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거창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

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주소정보의 제공
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9.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주소정보산업 진흥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에 출입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거 창 군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발급 대장

발급 번호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사유	사 진	수령인/ 수령일	반납인/ 반납일	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과 경감률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체납 군세에 대한 가산금 면제를 신설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경감 확대(안 제9조의2·별표)

1) 경감기한 연장: 2020. 12. 31. ⇒ 2021. 12. 31.

2) 경감률 확대: 9단계(10%~50%) ⇒ 14단계(10%~75%)

나. 소상공인의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9조의3)

1)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면제세목: 2020년 이후 부과한 군세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3) 면제제외: 3회 이상 군세 체납자

다.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 조문 정비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기간 만료에 따른 감면 삭제(안 제3조)

2) 일몰도래 감면 연장(안 제5조·제7조·제9조)

가) 대상: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나) 연장: 2021. 12. 31. ⇒ 2023.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입법예고(「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가) 예고기간: 2021. 3. 11.~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하고, “감면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감면률”을 “경감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군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경감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생 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군세

현 행	개 정 안
	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경률(제9조의2 관련)

임대료 인하율	경감률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 \textbf{개월} \text{ 수} \div 3$$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세법」 개정(2020. 12. 29. 시행)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 용어를 변경함

1) 균등분 ⇒ 개인분(안 제6조)

2) 재산분 ⇒ 사업소분(안 제7조)

나. 주민세 세율을 정함

1)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정함(안 제6조)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함(안 제7조)

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사항을 정함(안 제8조)

1) 신고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건축물 신축·증축 등

2)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

라. 법령 중복·재기재 등 삭제(안 제2조~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장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11.~3. 22.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제2조·제3조·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의 “제2장 담배소비세”를 삭제하고 제5조 조 제목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으로 한다.

제6조 앞의 “제3장 주민세” 및 “제1절 균등분”을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7조 앞의 “제2절 재산분”을 삭제하고,
제7조 조 제목 중 “세율”을 “사업소분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9조 앞의 “제3절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9조 조 제목 “(세율)”을 “(종업원분의 세율”)로 하고,
제10조 조 제목 “(신고의무)”를 “(종업원분의 신고의무)”로 한다.

제11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하고,
제11조 조 제목 “(세율)”을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5장 재산세”를 삭제하고
제14조 조 제목 “(납기)”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삭제하고
제15조 조 제목 “(세율)”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거창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장 담배소비세	<삭 제>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생 략)	**제5조(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생 략)
제3장 주민세	<삭 제>
제1절 균등분	<삭 제>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	제6조(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삭 제>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3절 종업원분	<삭 제>
제9조(세율) (생 략)	제9조(종업원분의 세율)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고의무) ①~② (생 략)	제10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제11조(세율) ①~③ (생 략)	제11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재산세	<삭 제>
제14조(납기) (생 략)	제14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현행과 같음)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삭 제>
제15조(세율) (생 략)	제15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현행과 같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지원사업 변경(안 제7조)

1) (현행) 종량제봉투 수수료 면제

2) (변경) 종량제봉투 지원

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안 제10조)

1)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50만원

다. 법령 재기재·위배소지 등 정비(안 제10조·제15조·제17조)

1) 군수의 예산편성권 침해소지 정비: 지급한다⇒지급할 수 있다

2) 법령 위임없는 권리제한 및 법령 재기재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392백만원 확보(322백만원 추가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가) 예고기간: 2021. 3. 11.~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월 3만원”을 “월 7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중 생년월일란에 “(남/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생 략) ②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일반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나.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30만원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나.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50만원
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증액과 종량제봉투 예산 지원

나. 관련 조문: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714	714	714	714	714	3,570

3. 관련 의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지급과 종량제봉투 예산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672,000천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5,000천원
3. 종량제봉투 지원: 17,0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강 준 석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 6. 9. 시행)으로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따라 법령 재기재 등 정비(안 제1조·제2조)

1) 목적: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함

2) 정의: 위임조례이므로 상위법령 정의규정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삭제

나.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 신설함(안 제9조~제15조)

1) 구성

가) 위원장 군수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

나) 당연직 위원: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

다) 위촉직 위원: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과장,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49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18.~3.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경기단체”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기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생활체육 동호인”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체육동호회”를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 과장
2.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3.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지원분야란 중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조직의 대회 개최 및 참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군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5.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6.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소속 종목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생략)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3. (생 략)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활동 2.~3. (현행과 같음)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9. (생 략) ③ (생 략)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조직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거

	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 과장, 2.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 3.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 6. 23. 시행)으로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안 제2조제2항)

1)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대행

2)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15~3.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내용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1. 6. 10.)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 법령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4조)

(현행)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변경)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나.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맞게 목적 변경함(안 제1조)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사항 등 불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2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19조)

1) 적용범위, 식재기준, 보고, 관리대장, 시행규칙

라.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및 비용부담 조문 분리(안 제13조·제14조)

마.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함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생활림

(변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생활숲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27.~3.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제5조제3항)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조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제5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도시숲·생활숲”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조 제목 “(회의 및 수당)”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

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8조·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써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삭 제>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② (생략)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10조(협의)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제11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	<삭 제>

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도시림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를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	<삭 제>

화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4조 관련)

유형	산정기준
1. 벌목, 나무줄기 자르기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과도한 가지훼손이란 나무줄기의 3분의 1 이상을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무비용의 20퍼센트 + 실제 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실제 작업비
4.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1) 군수의 승인 및 감독 2)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나. 군수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원인자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대체 나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대체 나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모든 경비)하여 산정

2) 나무 비용: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서식]

<table>
<tr><td colspan="8">가로수사업(나무심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명칭)</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
대상</td><td>가로수 위치</td><td colspan="6"></td></tr>
<tr><td>나무 종류</td><td></td><td>규격</td><td colspan="2">높이:
가슴높이지름:
나무밑동지름:</td><td>수량</td><td>그루</td></tr>
<tr><td colspan="2">사 유</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작 업 방 법</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작 업 기 간</td><td colspan="6">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td></tr>
<tr><td rowspan="2">부담비용</td><td>금 액</td><td colspan="6">금 원정( )</td></tr>
<tr><td>납부기간</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td></tr>
<tr><td colspan="8">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td></tr>
</table>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재기재 및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군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신설(안 제3조의2)

1)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나. 법령 등 재기재사항 삭제

1) 정의, 위원 기능·수당, 가산금, 시행규칙(안 제2조·제4조·제10조·제20조·제22조)

다. 실효 규정인 지하수특별회계 삭제(안 제3장(제12조~제16조)

1) 근거: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2) 내용

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나) 개정당시 부칙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2018. 12. 31. 까지로 존속기한 만료

라.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등 변경(안 제19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14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 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5.~2.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제4조 앞의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삭제하고,
제17조 조 제목 “(부과·징수)”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유량계”를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삭 제>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삭 제>
제4조(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삭 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용도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4.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5.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삭 제>
제17조(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30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3.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3.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제18조(산정방법) ①~② (생 략)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8조(산정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20조(가산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삭 제>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4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하수도법」 개정(2021. 1. 5. 시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위임 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위임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명시(안 제16조2)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여 정함(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제7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8.~2.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과당월”을 “부과하는 그 달”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사용료등”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금)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③ (생 략)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그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가산금)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제29조(가산금)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